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이선주 의원 등 6명(박정환, 강한곤, 손범구, 서보영, 도하석)
- 발의일자: 2024. 11. 6.
- 회부일자: 2024. 11. 6.
- 검토기간: 2024. 11. 6. ~ 11. 11.

2. 제안이유

- 공공건축의 계획 단계부터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공건축의 누수 등 불량시공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로 건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자문대상, 자문방법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자문결과의 제출, 의견청취 등 규정(안 제5조 ~ 제6조)
-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 「건축기본법」 제3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4. 11. 6. ~ 11. 17.):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불량시공을 방지하여 우수한 품질로 건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자문대상, 방법,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에서 건축하는 50억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을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완공전 품질자문을 통한 하자없는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 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공건축의 계획·조사·설계·유지관리에 대한 품질자문
2.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 품질자문
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대신한다.

제3조(자문대상) 자문단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자문방법) ①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공건축의 품질에 대하여 자문 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문단이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공사 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결과의 제출) 자문단은 자문을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건축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8.>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